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 펀드명 :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□ 변경 사항 :

- (1)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(2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 예정일 : 2019년 02월 12일

□ 변경 내용: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		
II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정보 [1]. 투자전략	4. 운용전문인력 <생략> 5. 투자실적 추이 <생략>	4. 운용전문인력 <u>업데이트</u> 5. 투자실적 추이 <u>업데이트</u>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<생략>	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<u>업데이트</u>
9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전략, 투자 방침 및 수익구조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) 투자전략 [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] <생략>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) 투자전략 [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] <u>업데이트</u>
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생략>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업데이트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공제제도 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(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일 경우 15%)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공제제도 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(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일 경우 15%) - (신설)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

	<u>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)</u> 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</u>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<u>업데이트</u>	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<u>업데이트</u>	

트러스톤자산운용(주)